

제2024-35호 2024년 4월 15일(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4-120호	도로 지정(변경) 공고[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508-5번지 외 2필지]	1
○ 여수시 고시	제2024-14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울촌면 동양엔파트 아파트~울촌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3
○ 여수시 고시	제2024-145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돌산읍 평사리 1447번지 및 1447번지 1호)	11
○ 여수시 고시	제2024-147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국동 37-4)	13
○ 여수시 고시	제2024-148호	여수 죽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4
○ 여수시 고시	제2024-14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15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4-1144호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7
○ 여수시 공고	제2024-1151호	2024년 뉴시어선 승선등록 단말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24-1155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21
○ 여수시 공고	제2024-1157호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산촌천)	22
○ 여수시 공고	제2024-1168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등록 공고(주)세방예코	24
○ 여수시 공고	제2024-1171호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추가 모집(2차)	25
○ 여수시 공고	제2024-117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7
○ 여수시 공고	제2024-1174호	건축신고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30
○ 여수시 공고	제2024-118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32
○ 여수시 공고	제2024-1184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35
○ 여수시 공고	제2024-1185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37
○ 여수시 공고	제2024-1187호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39
○ 여수시 공고	제2024-1189호	여수시 예산성과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43
○ 여수시 공고	제2024-1190호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 여수시 공고	제2024-1194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50
○ 여수시 공고	제2024-1195호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1
○ 여수시 공고	제2024-1202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60
○ 여수시 공고	제2024-1203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62
○ 여수시 공고	제2024-1213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64
○ 여수시 공고	제2024-1214호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66

회 략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508-5번지 외 2필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 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46m	4~6m	154㎡	도로대장 참조 (허가과 비치)	
화정면 백야리	508-5번지			20㎡	"	
화정면 백야리	508-4번지			114㎡	"	
화정면 백야리	508-16번지			20㎡	"	
이 하 빈 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11.

여 수 시 장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4. 4. 11.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울촌면 조화리 125-8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25, 소로1-413, 소로1-414, 소로1-415)사업

나. 명 칭: 울촌면 동양엔파트아파트~울촌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면 적: **기정** 782㎡ → **변경** 772㎡

나. 규 모

구 분	금회 시행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계	-	264	782	기정
			772	변경
중로 3-25	2	12.5	34	기정
			34	변경
소로 1-413	2	100	254	기정
			25	변경
소로 1-414	2	139	286	기정
			282	변경
소로 1-415	2	12.5	208	기정
			205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기간(변경): ▮ **변경** 2023. 7.13. ~ 2024.12.31.

└ **변경** 2023. 7.13.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조서

(중로3-25)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관리내용	성명	주소	
1	울촌	조화	170-6	답	496	34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9	조여원				기정
1	여수	조화	170-16	답	67	34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9	조여원				변경
합계					496	34						기정
					67	34						변경

(소로1-413)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관리내용	성명	주소	
1	여수	조화	170-6	답	496	27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9	조여원				기정
1	여수	조화	170-16	답	67	26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9	조여원				변경
2	여수	조화	173	대	370	3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27, 29-302호	박재웅				기정
2	여수	조화	173-3	대	31	3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27, 29-302호	박재웅				변경
3	여수	조화	174	답	1,092	38	순천시 조례동 1362, 501-1403호	채경숙				기정
3	여수	조화	174-3	답	38	38	-	여수시				변경
4	여수	조화	175	답	755	26	여수시 미평동 488-1, 305-306호	강해준				기정
4	여수	조화	175-9	답	25	25	-	여수시				변경
5	여수	조화	175-2	대	430	1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75-2	유인길				기정
5	여수	조화	175-10	대	1	1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75-2	유인길				변경
6	여수	조화	175-3	답	125	42	순천시 원가곡길 75, 104-301호	박부영				기정
6	여수	조화	175-11	답	41	41	순천시 원가곡길 75, 104-301호	박부영				변경
7	여수	조화	144-10	전	45	15		여수시				기정
7	여수	조화	144-12	전	15	15		여수시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8	울촌	조화	126	답	369	4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91, 06-602호	김원태				기정
							인천시 동구 화수동 38	박연규				
8	여수	조화	126-3	답	48	4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91, 06-602호	김원태				변경
							인천시 동구 화수동 38	박연규				
9	울촌	조화	127	답	394	26	대구 수성구 공경로 70, 102-1303호	이정숙				기정
9	여수	조화	127-6	답	26	26	대구 수성구 공경로 70, 102-1303호	이정숙	변경			변경
합계					4,076	254						기정
					292	251						변경

(소로1-414)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울촌	조화	131-8	답	214	31	경남 김해시 우암로 106, 307동 1303호	임기업	근저당권 설정	부경양돈협동조합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55번길	기정
1	여수	조화	131-20	답	31	31	경남 김해시 우암로 106, 307동 1303호	임기업	근저당권 설정	부경양돈협동조합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55번길	변경
2	울촌	조화	130	답	553	18	전남 여수시 여서로 181, 605동 1511호	김성현	근저당권 설정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남 여수시 여항단지로 210	기정
									지상권 설정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남 여수시 여항단지로 210	
2	여수	조화	130-3	답	17	17	전남 여수시 여서로 181, 605동 1511호	김성현	근저당권 설정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남 여수시 여항단지로 210	변경
									지상권 설정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남 여수시 여항단지로 210	
3	울촌	조화	131-1	답	198	24	전북 익산시 무왕로 32길 85, 108동 1004호	이정희				기정
3	여수	조화	131-18	답	24	24		여수시				변경
4	울촌	조화	122-7	전	1,266	38	광주 북구 우치로 227, 3층	제이앤시티 주식회사				기정
4	여수	조화	122-14	전	37	37	광주 북구 우치로 227, 3층	제이앤시티 주식회사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관리내용	성명	주소	
5	울촌	조화	122-8	전	869	105	여수시 여서동 484, 301-809호	박기정	근저당권설정	여수원예농업협동조합	전남여수시서교동 541-2	기정
									지상권설정	여수원예농업협동조합	전남여수시서교동 541-2	
5	여수	조화	122-15	전	103	103		여수시				변경
6	울촌	조화	125-8	도	2,438	70		여수시				기정
6	여수	조화	125-8	도	2,438	70		여수시				변경
합계					5,538	286						기정
					2,650	282					변경	

(소로1-415)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관리내용	성명	주소	
1	여수	조화	193-7	답	664	4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감)				기정
1	여수	조화	193-11	답	4	4		여수시				변경
2	여수	조화	201-25	도	1,088	1		여수시				
3	여수	조화	193-10	답	110	40	-	여수시				기정
3	여수	조화	193-12	답	39	39		여수시				변경
4	여수	조화	165-9	답	62	35	-	여수시				기정
4	여수	조화	165-14		33	33		여수시				변경
5	여수	조화	182	학	16,870	23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감)				기정
5	여수	조화	182-6	학	23	23		여수시				변경
6	여수	조화	165-5	답	179	17	전남 여수시 울촌면 동산개길 40	서홍심				기정
6	여수	조화	165-13	답	17	17	전남 여수시 울촌면 동산개길 40	서홍심				변경
7	여수	조화	165-12	답	179	35	전남 여수시 울촌면 동산개길 40	서홍심				기정
7	여수	조화	165-15	답	35	35	전남 여수시 울촌면 동산개길 40	서홍심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8	울촌	조화	166-1	답	267	1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48, 5동 502호	황채영					기정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18번길 22	안호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73, 101동 1001호	진기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19번길 38	최숙녀					
							경남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1101번길 145	조광재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203, 101동 1301호	이화자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 62, 101동 1908호	조영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94, 102동 801호	박종식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94, 102동 801호	김옥남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15길 24, 201호	배영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200, 16동 506호	이성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538, 201동 201호	손금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221, 107동 1902호	김선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9, 105동 503호	주정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186-1, 2동 110호	주은금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123, 109동 1006호	민수식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35번길 10-8	이나겸												

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8	울촌	조화	166-1	답	267	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613번길 5, 601호	이경옥				기정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821, 1108호	정근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59, 216동 1604호	구정민	압류	마산세무서장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군로 1483-75	성금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39번길 19-30, 213동 104호	성경열				
							경남 김해시 율하2로 178, 1209동 1002호	김은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54번길 18-11	이미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15길 45, 102호	강상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105동 504호	김단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64번길 12	김태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317번길 21, 101호	박성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번길 47, 601호	배홍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9	주식회사 빅터개발	압류	창원세무서장									
8	여수	조화	166-5	답	13	13		여수시				변경
9	울촌	조화	862-6	도	81	4	-	국				
10	울촌	조화	167	답	433	29	여수시 조화리 79	조주현				기정
10	여수	조화	167-1	답	29	29	여수시 조화리 79	조주현				변경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11	울촌	조화	170-6	답	496	7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9	조여원				기정
11	여수	조화	170-16	답	67	7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9	조여원				변경
합계					20,429	208						기정
					1,429	205						변경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여 수 시 장

1. 허가번호: 제2024 00018호
2. 허가 일자: 2024년 4월 9일
3. 점용 사용의 장소: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47
4. 점용 사용의 면적: 96㎡
5. 점용 사용의 기간: 2024-04-10 ~ 2025-12-31
6. 점용 사용의 목적: 평사리 1300-2번지 야영장 및 제1종근린 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7.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이경숙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33, 205동 1501호
(웅천동, 웅천지웰2차아파트)

끝.

여수시 고시 제2024-145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여 수 시 장

1. 허가번호: 제2024 00019호
2. 허가 일자: 2024년 4월 9일
3. 점용 사용의 장소: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47-1
4. 점용 사용의 면적: 6㎡
5. 점용 사용의 기간: 2024-04-10 ~ 2025-12-31
6. 점용 사용의 목적: 평사리 1300-2번지 야영장 및 제1종근린 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7.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이경숙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33, 205동 1501호 (웅천동, 웅천지웰2차아파트)

끝.

여수시 고시 제2024-147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여 수 시 장

1. 허가번호: 제2024 00021호
2. 허가 일자: 2024년 4월 12일
3. 점용 사용의 장소: 여수시 국동 37-4
4. 점용 사용의 면적: 34㎡
5. 점용 사용의 기간: 2024-04-12 ~ 2024-12-31
6. 점용 사용의 목적: 국동 37-4번짓 하수도 정비공사 관련 측구 수로관, 집수정, 관로 설치
7.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여수시장(하수도과)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국동)

끝.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24-134호(2024. 3.28.)]된 여수 죽림1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15.

여 수 시 장

1.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 관계 도서는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5.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506, 507, 510-4, 510-5, 511, 514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891	20240415		20091013	여수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양시의 행정명칭 조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711-3, 712-2	전라남도 여수시 반월1길 74-1 (선원동)	20240415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200-26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42 (둔덕동)	20240415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상암마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32-11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월항윗길 7	20240415		20080911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58, 61-2, 62-1, 62-7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55 (국동)	20240415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134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2길 96-23 (신덕동)	20240415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109 (국동)		20240415	건축물 신축	20091013	어항단지를 통과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107-1 (국동)		20240415	건축물 신축	20091013	어항단지를 통과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2길 96-23 (신덕동)		20240415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여수시 제2024-11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어선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7호에 의해 부과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거주상태가 거주불명등록자로 확인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4월 9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4. 10. ~ 2024. 4. 25.(16일간)
2.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

성명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금액(원)
고*석	거주불명등록	「어선법」 제21조제1항 (어선검사지연)	1,000,000

3.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전남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19)

4. 기 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증가산금 가산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소유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4년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낚시어선 승선단말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11.

여수시장

1. 사업목적 :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승선원 확인 및 승선객 편의성을
개선하여 낚시어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전 도모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4. 11. ~ 2024. 5. 8.(27일간)
- 지원율 :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구매단가 약 100만원)
- 사업대상 : 「낚시관리및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어업인
- 지원내용 :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
- 지원한도 : 낚시어선 1척당 단말기 1대 지원
- 제외대상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낚시어선)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낚시관리팀(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읍·면·동 사무소 ※가까운 곳에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 가. 어업허가증, 낚시어선 신고증 사본 1부.
- 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5. 사업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 → ② 사업자 선정 통보 → ③ 물품 납품 → ④ 준공 및 사업정산

6. 유의사항

- 지원받은 장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
- 사후관리기간 5년 내 타 시·군 전출, 어선 매도 시 보조금 반납하여야 함.
- 통신비, 수리비 등 유지비용은 지원 제외
- 낚시어선 승선등록단말기를 통해 카드결제 기능 가능

7. 문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낚시관리팀(☎ 659-5597)

-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 2.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남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 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주소				
	종사경력	년			
신청내용	어선명 (어선번호)	남시 신고번호			
	어업허가	남시신고 유효기간			
	금융기관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및 남시어선 신고증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p>○ 상기 본인은 남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 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도덕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여수시장 귀하</p>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943	패류양식	수하식 (수하연식)	3	응천동 두럭	2024.06.28. 2034.06.27.	면제	여수시 응천동	응천어촌계	10979호 재개발
11944	패류양식	바닥식 (살포식)	5	소라 사곡	2024.06.07. 2034.06.06.	면제	여수시 소라면	새마을회 대표 유***	10974호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4. 04. 11.

여 수 시 장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산촌천)

여수시 공고 제2024-1157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시설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대표자 (성 명)		주소	
소하천명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목적 및 사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m ²)	점용목적	점용기간	
2024-5	산촌천	여수시 좌수영로 416	한국전력 공사 여수지사장	율촌면 산수리 1562, 1628	0.43m ²	전주 4분 신설	2024. 4. 9. ~ 2029. 3. 31.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등록말소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세방에코 (윤회영)	여수시 소라면 마산로 148-35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여수2014-10-01)	206211-0043815	2024.4.11.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2024. 4. 11. ~ 2024. 4. 25.(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2차)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따라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여수시장

1. 사업기간 : 2024. 4. ~ 2024.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4. 4. 12.(금) ~ 연중 (*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3. 신청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로서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지원내용

- 빈집정비 보조사업 : 소유자 직접 철거 시 동당 3백만원 철거비용 보조

5. 지원규모 : 17동, 51,000,000원

-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
-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별도 신청

6. 지원절차



7. 선정기준

- 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 다.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일 경우

구분 \ 배점	배점	세부배점	
계	100점		
건축물 구조 안전성	40점	지붕 및 외벽 파손상태	20점
		건축물 기울어짐 정도	10점
		기초 침하 정도	10점
생활 위생	20점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방치 상태	10점
		해충 유해동물 서식 여부	10점
경관성	20점	외부 마감재 노후 정도	10점
		창문 등 기물 파손상태	10점
취약계층, 사업 연계성	20점	취약계층 대상 여부	10점
		슬레이트사업 연계성	10점

8.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사진대장(빈집 철거 전 장면 촬영)
- 나.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 다. 건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2)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및 빈집소유사실 확인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9. 기타 유의사항

- 가.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물을 철거할 경우 빈집 철거와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나.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061-659-4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말소일자 : 불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4. 11. ~ 4. 26(15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불임참조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부존재(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불임참조)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1.

여 수 시 장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내용

연 번	대지위치	대장상소유자		건축물대장 현황				말소 일자
		성명	주소	구분	구조/지붕	용도	연면적 (㎡)	
1	화양면 이목리 1416	김정○	화양면 이목리 1436	1층/1동	목조/	주택	31.5	2024.1.11.
2	묘도동 1805	백미○	신기동 6 307동 304호 (주공아파트)	1층/1동	경량철골구조/ 판넬	제1종 근생	97.98	2024.1.16.
3	화양면 용주리 709	천광○	화양면 용주리 710	1층/1동	토담/스레이트	주택	14.21	2024.1.25.
4	화양면 화동리 36-1	(유)삼호 특○	화양면 화동리 36-1	1층/1동	철제조립식	사무 실	86.4	2024.1.25.
5	오천동 245-1	장길○	오천동 245-1	1층/1동 、	목조/슬레이트	주택	29.81	2024.2.1.
6	선원동 1137	박병*	선원동 1066-1	1층/4동	브릭/스레트	주택	75	2023.2.6.
						주택	32	
						창고	13.2	
						축사	2.4	
		-	이	하	여	백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여수시 제2024-1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신고 취소 처분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여 수 시 장

- 가. 공고내용 : 건축신고(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나. 공고기간 : 2024. 4. 11. ~ 5. 4.(25일간)
-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신고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디오케이토건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기 미준공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신고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건축법」제11조제7항					
청문실시	기관명	여수시청	부서명	허가과	담당자	시설9급 배강현
	주소	여수시 시청로 1			전화번호	061-659-4112
	일시	2024년 5월 8일 14시			장소	여수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의회법무팀장			
성명		채주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1.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주식회사 에이치엔	전라남도 화정면 적금리 산1번지 북서쪽 3.23km 이격 공유수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한 해양폐기물 해양배출 작업선(바지선) 설치	2,542㎡ (직접 1,903.4㎡) (간접 638.6㎡)	허기일로부터 10개월

* 점용·사용 장소 붙임 참조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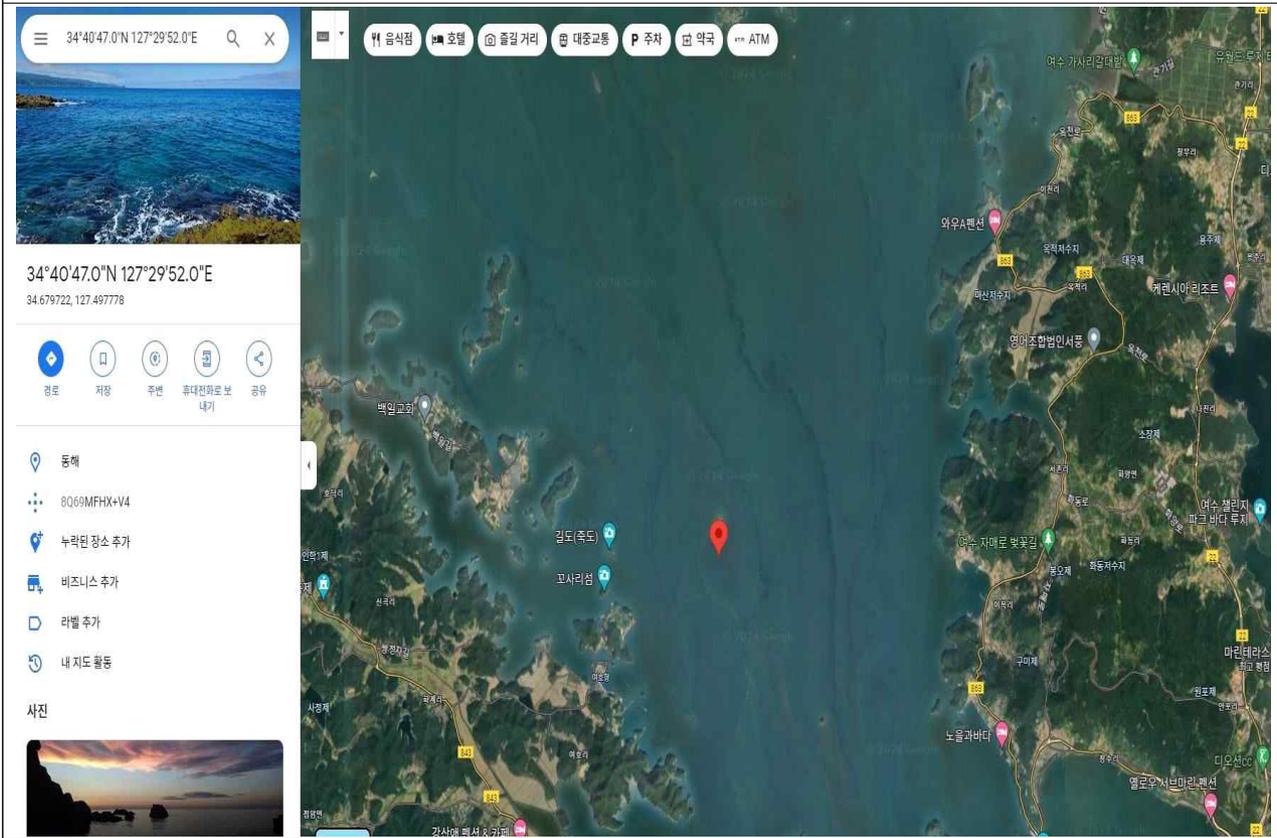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4. 4. 12. ~ 2024. 5. 9.(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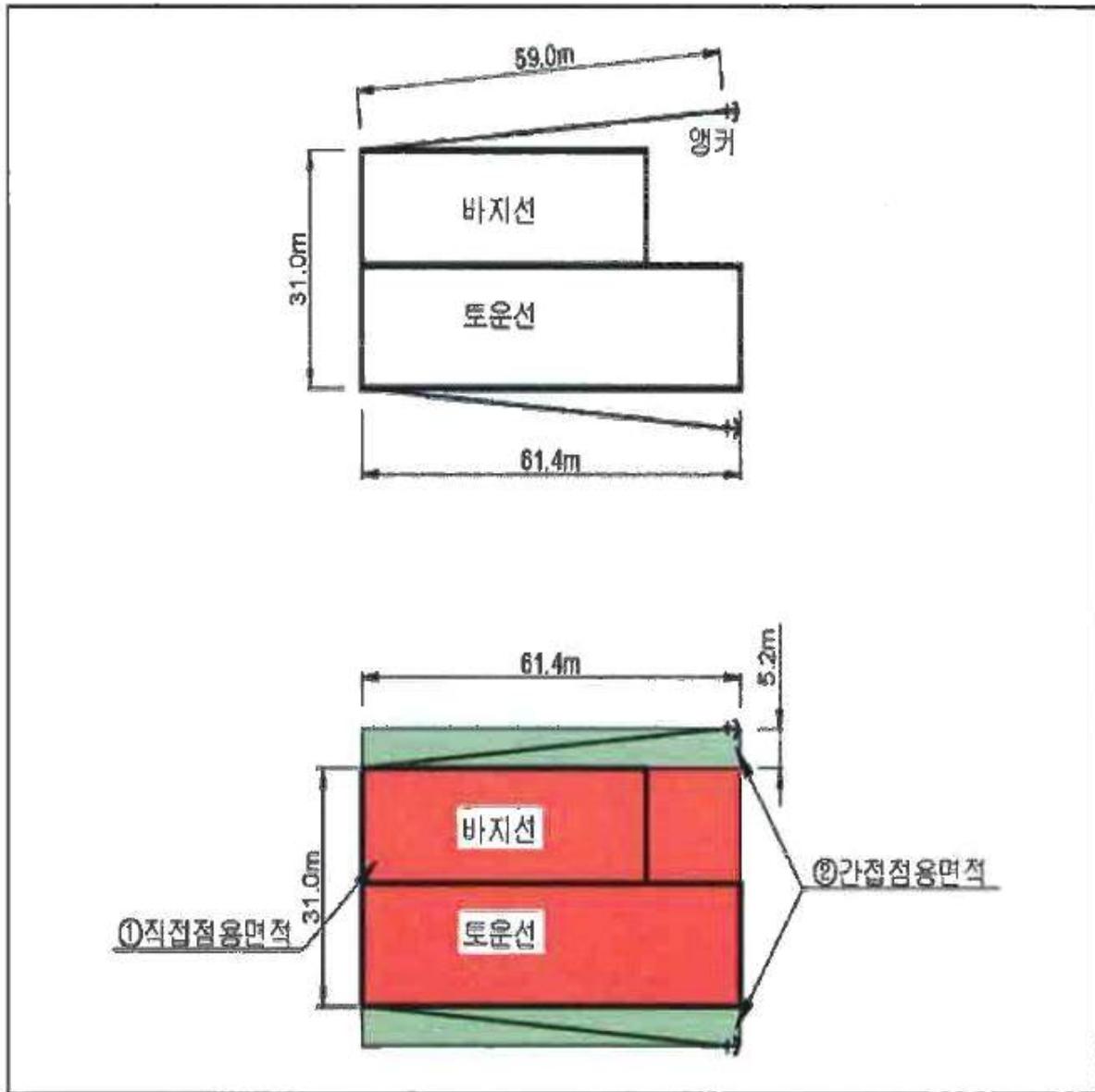
- 제출기간: 2024. 4. 12. ~ 2024. 5. 9.(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추어 제출
- 제출처: 해양정책과(여수시 신월로 648, 4층) 또는 전자우편(OJH0308@korea.kr)
- 담당자: 공유수면관리팀 오종혁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061-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위치



(1) 점용계획



(2) 구적표(전체)

구분	부호	계산식	면적	단위	비고
직접점용	①	$61.4\text{m} \times 31.0\text{m}$	1,903.4	m ²	토운선&바지선
간접점용	②	$61.4\text{m} \times 5.2\text{m} \times 2$	638.6	m ²	앵커
계			2,542.0	m ²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2.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문화유산과)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987-11번지 지선	여수 돌산 방답진 굴강 정비공사	1,426.37㎡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4. 4. 12. ~ 2024. 5. 2.(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4. 4. 12. ~ 2024. 5. 2.(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pdean@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해양수산8급 박정호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2.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127번지 일원	삼산면 광도 방파제 및 접안시설 정비공사	646㎡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4. 4. 12. ~ 2024. 5. 2.(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4. 4. 12. ~ 2024. 5. 2.(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pdean@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해양수산8급 박정호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공 고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취지

- 해당 상위법이 폐지(2008. 3. 28.)됨에 따라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치 목적 상실로 조례 폐지

2. 주요내용

-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007. 1. 8.)
여수시 조례 제581호 폐지
- 총 11개조(목적, 정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등) 폐지

3. 폐지조례안: (붙임2) 문서 참고

4. 입법 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5. 2. (21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번호 061-659-2119)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건축과) (59675)
- 업무담당자: 건축과 김지훈(polyplus@korea.kr)
- 문의전화: 061-659-4093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2)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고 제2024-1189호

공 고

「여수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여수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결과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 직 업	위촉사유	임 기	비 고
1	위원장	김종기	부 시 장	당 연 직	재 임 기 간	
2	부위원장	김병완	행 정 안 전 국 장	"	"	
3	위 원	나병곤	문 화 산 업 국 장	"	"	
4	"	류갑선	교 육 복 지 국 장	"	"	
5	"	정재호	수 산 관 광 국 장	"	"	
6	"	김태홍	환 경 녹 지 국 장	"	"	
7	"	염승열	건 설 교 통 국 장	"	"	
8	"	김행기	여 수 시 의 회 의	위 촉 직	2024. 4. 12. ~ 2026. 4. 11.	
9	"	장인호	前) 여 수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	
10	"	전지원	세 무 사	"	"	

공 고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직장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직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직장의 범위 법적 근거 명시(안 제2조제2호)
- 직원의 범위 확대 적용(안 제2조제3호)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현행화(안 제10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5.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 ~ 5. 2.(20일간)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5월 2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제출기관 : 여수시장(총무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 총무과
 - 팩 스 : 061-659-5807
 - 전자메일 : ksisml33@korea.kr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 061-659-3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을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공무원, 공무원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직장"이란 <u>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을 말한다.</u></p> <p>3. "직원"이란 <u>시에 근무하는 공무원</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u>」에 따른 본청, <u>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u>-----.</p> <p>3. ----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공무원, 공무원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p>
<p>제10조(실태조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0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u></p>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945	패류양식	수하식 (수하연식)	20	쌍봉동 소호	2024.06.28. 2034.06.27.	면제	여수시 소호동	쌍봉어촌계	10979호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4. 04. 15.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793호(‘23. 10. 23,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 재정안정화 계정 활용도 확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요건 완화 및 조문 정비 등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정안정화 계정 활용도 확대 등을 위한 사용 용도 규정 제고(안 제4조)
- 통합기금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규정 신설(안 제5조)
-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안 제6조제1항)

- 심의 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안 제6조제2항, 제3항)
- 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제5항)
- 기타 조문 정비 및 자구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5. 2.(20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기획예산담당관)

- 전 화 : 061-659-3419 팩스 : 061-659-5813

- 이 메 일 : joooo2@korea.kr * joooo2 : 알파벳-joooo / 숫자-2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061-659-3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 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퍼센트”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활용해야”를 “활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균금액보다 감소한”을 “평균금액 또는 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세입 재원의 보전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별회계의”를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필요하다고”를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액 중”을 “총액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 금고”를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로, “설치하여 통합기금을”을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하고 “운용해야”를 “운용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요 항목”을 “주요항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제2항제4호 중 “수행하지”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p> <p>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u>10퍼센트</u>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p> <p>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u>10퍼센트</u>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p> <p>3. (생략)</p> <p>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u>활용</u>해야 한다.</p> <p>1. 해당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직전 3년간의 <u>평균금액</u>보다 <u>감소한</u> 경우</p>	<p>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 ---100분의 10 -----</p> <p>2. ----- 100 <u>분의 10</u> -----</p> <p>3. (현행과 같음)</p> <p>③ ----- ----- ----- <u>활용</u> <u>하여야</u> ---.</p> <p>1. ----- ----- <u>평균금액</u> 또는 <u>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u> <u>한 세입 재원의 보전이 필요한</u></p>

현 행	개 정 안
<p>2. ~ 4. (생략)</p> <p>5. 일반회계 및 <u>특별회계</u>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p> <p>6. 그 밖에 지정 추진에 <u>필요하다</u> <u>고</u> 시장이 인정한 경우</p> <p>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 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금 <u>총액</u> 중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p> <p>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u>시 금고</u>에 별도의 계좌를 <u>설치하여 통합기금</u>을 예치·관리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u>운용</u> <u>해야</u>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일반회계 및 <u>특별회계</u>, 다른 기 금-----</p> <p>6. ----- <u>통합기금의</u> <u>사용이 필요하다</u>고 ----- -----</p> <p>④----- ----- ----- <u>총액의</u> ----- ----- -----.</p> <p>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u>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u> <u>하여 시 금고</u>-----<u>설치</u> <u>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u> <u>이 높은 금융상품으로</u> -----<u>운</u> <u>용하여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를 둔다.</p> <p>1. (생 략)</p> <p>2. <u>주요 항목</u>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3.·4. (생 략)</p> <p><신 설></p> <p>5. <u>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신 설></p> <p><신 설></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u></p>	<p>1. (현행과 같음)</p> <p>2. <u>주요항목</u> ----- -----</p> <p>3.·4. (현행과 같음)</p> <p>5. <u>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u>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u>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u></p> <p>1. <u>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u></p> <p>2. <u>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u></p> <p>3. <u>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u></p> <p>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구성한다.</p> <p><u>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u></p> <p><u>1. 개별 기금의 조례로 지정한 기금 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u></p> <p><u>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p> <p>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p> <p>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p> <p><u><신설></u></p>	<p>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수행하기</u> -----</p> <p>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5.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182-1번지 일원	남면 월전 방파제 연장공사	178㎡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4. 4. 15. ~ 2024. 5. 5.(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4. 4. 15. ~ 2024. 5. 5.(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pdean@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해수8급 박정호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5.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남면 유송리 653-1번지 일원	남면 송고마을 방파제 보강공사	338㎡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4. 4. 15. ~ 2024. 5. 5.(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4. 4. 15. ~ 2024. 5. 5.(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pdean@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해수8급 박정호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5.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남면 연도리 905-5번지 일원	남면 역포항 부잔교 설치공사	159.4㎡	15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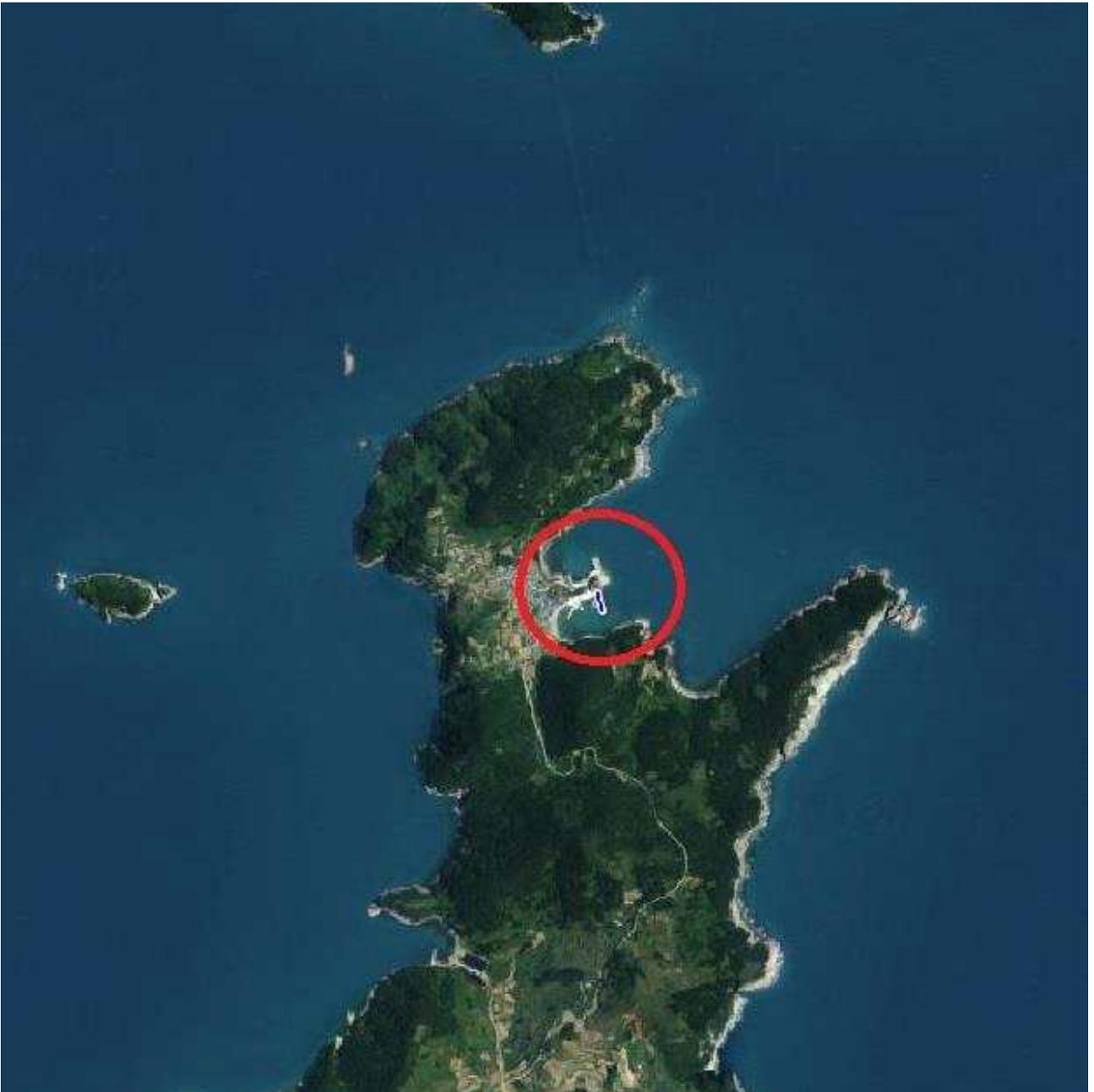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4. 4. 15. ~ 2024. 5. 5.(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4. 4. 15. ~ 2024. 5. 5.(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pdean@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해수8급 박정호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2024년 제1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5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구간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여수시 봉산2로 20 (여수식자재마트 어항점 옆)	양측 (L=68M, 73M)	절대주정차 금지구역(황색복선)	2024. 5. 7.
2	여수시 봉산2로 32 (여수한일관 옆)	양측 (L=55M, 59M)	절대주정차 금지구역(황색복선)	2024. 5. 7.
3	여수시 고소3길 9 (여수중앙교회 앞)	편측 (L=30M)	절대주정차 금지구역(황색복선)	2024. 5. 7.
4	여수시 웅천동 1701 (웅천골드클래스 공사장 옆)	편측 (L=114M)	절대주정차 금지구역(황색복선)	2024. 5. 7.
5	여수시 남산동 1165 (남산동 공영주차장 들레)	편측 (L=107M)	절대주정차 금지구역(황색복선)	2024. 5. 7.
6	여수시 덕양로 18 (죽림농협 건너편)	편측 (L=60M)	절대주정차 금지구역(황색복선)	2024. 5. 7.
7	여수시 여문2로 141 (문수중학교 옆)	편측 (L=75M)	절대주정차 금지구역(황색복선)	2024. 5. 7.
8	여수시 둔덕7길 46-19 ~ 46-17 (퍼시픽 기계기술~태양샷시건업 옆)	양측 (L=65M, 45M)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단선)	2024. 5. 7.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3. 예고(공고)기간 : 2024. 4. 15.(월) ~ 5. 6.(월), 22일간
-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 2024. 4. 15.(월) ~ 5. 6.(월), 22일간

다. 제출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 여수시 도원로 279, 3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팩스 :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여수시 봉산2로 20, 여수식자재 마트 인근 (L=68M, 73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② 여수시 봉산2로 32, 한일관 인근 (L= 55M, 59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③ 여수시 고소동 656, 여수중앙교회 앞 (L= 3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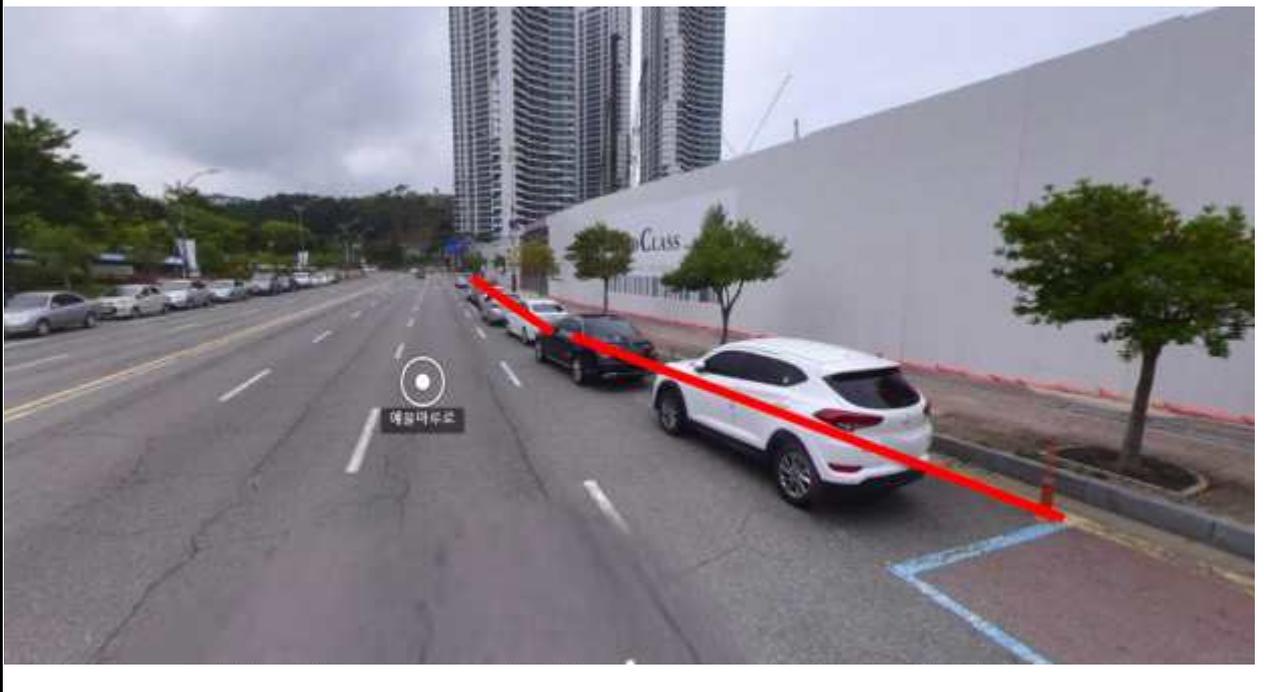


④ 여수시 웅천동 1701, 웅천골드클래스 공사장 앞 (L= 114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⑤ 여수시 남산동 1165, 공영주차장 둘레 (L= 107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⑥ 여수시 죽림리 1245, 죽림농협 건너편 (L= 6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⑦ 여주시 여문2로 141, 문수중학교 옆 (L= 75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⑧ 여수시 둔덕7길 46-19 ~ 둔덕7길 46-17, 퍼시픽 기계기술 ~ 태양샷시건업
(L= 65M, 45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